
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 제출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나 나무·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(제51조 삭제, 안 제52조 및 제53조).

II. 검토의견

현행법은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¹⁾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고,²⁾ 개

1)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기본계획) ① 댐을 건설하려는 자(이하 “댐건설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2호의 사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경우에만 포함한다.

1. ~ 13. (생략)

2)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토지의 출입 등)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조사·측량이나 댐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,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, 토석(土石)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.

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(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)를 말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정안 제53조제3항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권자로 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 제14조제2항에서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허가를 내리는 주체를 “시장·군수 ‘또는’ 구청장”으로 약칭하고 있어,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·징수권자도 위 약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53조(과태료) <신 설>	제53조(과태료) ①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53조(과태료) ①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① (생 략)	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	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(시·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	③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	③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

- ④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나무, 토석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장애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장애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. 다만,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⑥ 제4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.
-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.
- ⑨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⑩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- ⑪ 제10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⑫ 댐건설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1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(裁決)을 신청할 수 있다.

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<u>해당한다</u>)가 부과·징수 한다.	----- <u>해당한다)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이</u> ----- ---	----- <u>해당한다)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</u> ----- ---
---	---	---

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
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은 정)